



제439회국회(정기회)
제1차 교육위원회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일반학교에 재학 중인 시·청각장애학생에 대한
순회교육 지원 근거 마련〉

■ 강경숙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9042호)

2026. 9.

교 육 위 원 회

전문위원 신 문 근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일반학교에 재학 중인 시·청각장애학생에 대한 순회교육 지원 근거 마련 ..	3
2. 개정안 부칙	8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강경숙 의원 등 12인

2. 발 의 일 : 2026. 5. 21.

3. 회 부 일 : 2026. 5. 22.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교육장 또는 교육감으로 하여금 일반학교에서 통합교육을 받고 있는 특수교육대상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일반학교 및 특수교육 지원센터에 특수교육교원 등을 배치하여 순회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시각·청각장애 학생의 경우 점자 및 수어 활용, 보조공학기기 사용 등 교수·학습활동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역량을 습득하기 위해서 고도의 전문성을 갖춘 교사로부터 장기간 계획적이고 지속적인 교육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전문 교원은 대부분 시각·청각장애특수학교에 소속되어 있어 일반학교에 배치된 시각·청각장애 학생들은 장애 특성에 적합한 전문적인 교육을 지원받는 데 한계가 있는 상황임.

이에 교육장 또는 교육감이 시각·청각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를 교육하는 특수학교의 장으로 하여금 일반학교에서 학습하고 있는

시각·청각장애 학생에 대한 순회교육을 지원하게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시각·청각장애 학생의 학습권과 교육 기회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5조제1항 후단 신설).

Ⅲ. 검토의견

1. 일반학교에 재학 중인 시·청각장애학생에 대한 순회교육
지원 근거 마련(안 제25조제1항 후단 신설)

가. 개정안의 요지

☐ 개정안은 일반학교에서 통합교육을 받고 있는 시·청각장애학생에 대하여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특수학교장으로 하여금 순회교육을 지원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특수교육교원을 따로 둘 수 있게 하려는 것임.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5조(순회교육 등) ①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일반학교에서 통합교육을 받고 있는 특수교육대상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일반학교 및 특수교육지원센터에 특수교육교원 및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담당 인력을 배치하여 순회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제25조(순회교육 등) ① ----- ----- ----- ----- ----- ----- ----- <u>이 경우 시각장애 또는 청각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하여는 해당 장애유형의 특수교육대상자를 교육하는 특수</u>

② ~ ⑥ (생 략)	<u>학교의 장으로 하여금 순회교육을 지원하게 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특수교육교원을 따로 둘 수 있다.</u> ② ~ ⑥ (현행과 같음)
-------------	--

나. 검토의견

□ 순회교육이란 특수교육교원 및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담당 인력이 각 급학교나 의료기관, 가정 또는 복지시설(장애인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등을 말함) 등에 있는 특수교육대상자를 직접 방문하여 실시하는 교육으로¹⁾,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일반학교에서 통합교육²⁾을 받고 있는 특수교육대상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일반학교 및 특수교육지원센터에 특수교육교원 및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담당 인력을 배치하여 순회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³⁾

□ 2025년 4월 기준 전체 특수교육대상 시각장애인 중 39.4%에 해당하는 661명, 전체 특수교육대상 청각장애인 중 81.5%에 해당하는 2,293

- 1) 「장애인 등을 위한 특수교육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8. “순회교육”이란 특수교육교원 및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담당 인력이 각급학교나 의료기관, 가정 또는 복지시설(장애인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 등에 있는 특수교육대상자를 직접 방문하여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
- 2) 「장애인 등을 위한 특수교육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6. “통합교육”이란 특수교육대상자가 일반학교에서 장애유형·장애정도에 따라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또래와 함께 개개인의 교육적 요구에 적합한 교육을 받는 것을 말한다.
- 3) 「장애인 등을 위한 특수교육법」 제25조(순회교육 등) ①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일반학교에서 통합교육을 받고 있는 특수교육대상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일반학교 및 특수교육지원센터에 특수교육교원 및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담당 인력을 배치하여 순회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명이 일반학교에서 통합교육을 받고 있음.

[시·청각장애 특수교육대상자 현황('25. 4. 기준)]

구분	특수학교	일반학교		특수교육 지원센터	계(명)
		특수학급	일반학급 (전일제 통합학급)		
시각장애	1,017	207	454	-	1,678
청각장애	511	689	1,604	8	2,812

※ 출처: 2025 특수교육통계(교육부)

□ 일반학교에서 통합교육을 받고 있는 특수교육대상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일반학교 및 특수교육지원센터에 전체 특수교육교원 중 62.3%에 해당하는 17,712명⁴⁾이 배치되어 있으나,

[전체 특수교육교원 배치 현황(2021~2025)]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
특수학교	9,501	9,866	10,146	10,441	10,733
특수학급	12,718	13,632	13,888	14,904	15,911
특수교육지원센터	1,275	1,464	1,565	1,739	1,801
계	23,494	24,962	25,599	27,084	28,445

※ 출처: 특수교육통계(2021~2025), 국·공·사립 특수교사 전체 현황(기간제교원 포함)

시각·청각장애 학생의 경우 점자 및 수어 활용, 보조공학기기 사용 등 교수·학습활동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역량을 습득하기 위해서 고도의 전문성을 갖춘 교사로부터 장기간 계획적이고 지속적인 교육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전문 교원은 대부분

4) 기간제 교원 포함

시각·청각장애특수학교에 소속되어 있어 일반학교에 배치된 시각·청각장애 학생들은 장애 특성에 적합한 전문적인 교육을 지원받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 개정안은 시각·청각장애특수학교에 소속되어 있는 전문 교원으로 하여금 순회교육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통합교육을 받는 시각·청각장애 학생의 학습권과 교육 기회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효과가 기대됨.

□ 또한, 일반학교의 경우 시·청각장애학생에 대한 원활한 지원을 위하여 특수학교 수준의 관련 시설 및 교구 등도 함께 확보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 교육부는 특수교육지원센터 교원의 시·청각장애교육 전문성 부족으로 시·청각장애학생에 대한 통합교육 지원에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하면서, 시·청각장애 특수학교 학생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므로 해당 학교에 배치된 교원을 통한 순회교육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음.

[최근 5년간 시·청각장애 특수학교 특수교육대상자 배치 현황(매년 4.1.기준)]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
시각장애	1,130	1,077	1,079	1,025	1,017
청각장애	605	589	560	535	511
계	1,735	1,666	1,639	1,560	1,528

※ 출처: 2025 특수교육통계(교육부)

- 아울러, 특수교육지원센터에 시·청각장애학생 교육전문성을 갖춘 특수교육교원을 추가 배치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의견과 신규 교원 확충 없이 시·청각장애학생을 위한 순회교육 담당 교원을 따로 둘 수 있도록 규정할 경우 특수교사의 업무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의견도 제시됨.

[개정안 관련 관련기관 의견제출]

<타부처> 일부수정(행정안전부)

- 시·청각장애학생 순회교육을 위한 교원을 따로 둘 수 있다는 규정이 교원 증원을 전제로 한 것이라면 「정부조직법」 제8조5)의 취지에 따라 관련 내용을 대통령령에 규정 필요

<시·도교육청> 일부수정

- (충청남도 예산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에 시·청각장애학생 교육 전문성을 갖춘 특수교육교원을 추가 배치하는 것이 더 바람직함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신규 교원 확충 없이 시·청각장애학생을 위한 순회교육 담당 교원을 따로 둘 수 있는 규정만을 마련할 경우 특수교사의 업무 부담이 가중될 수 있음

<관련 단체> 일부수정

- (경기교사노동조합) “필요한 특수교육교원을 따로 둘 수 있다”는 규정만으로는 실제 전담인력의 증원 및 배치를 담보하기 어려우므로, 특수교육지원센터에 시·청각장애학생 순회교육을 담당하는 특수교육교원을 두도록 법률에 규정할 필요가 있음

5) 「정부조직법」 제8조(공무원의 정원 등) ① 각 행정기관에 배치할 공무원의 종류와 정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정원, 공무원 배치의 기준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각 행정기관에 배치하는 정무직공무원(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에 배치하는 정무직공무원은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법률로 정한다.

2. 개정안 부칙

가. 개정안의 요지

- ☐ 안 부칙은 개정안의 시행일을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개정안 조문]

안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나. 검토의견

- ☐ 개정안의 경우 특수학교에 배치된 특수교육교원이 순회교육을 지원하게 되므로 특수교육교원의 업무분장 조정 등 준비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개정안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서는 유예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문 의 처

02)6788-5186